

## 북핵 폐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1. 문제 제기

최근 6자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거나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확산 지원(Nonproliferation Assistance)’ 내지 ‘협력적 위협 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다소 새로운 개념으로서 구소련에 대한 미국의 ‘협력적 위협 감축’과 이를 확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sup>1)</sup> 대북 비확산 지원에 대한

---

\* 이 글은 전봉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접근”, 박기덕 공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서울: 세종연구소, 2007)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1) CTR은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른 구소련의 전략핵무기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미 상원 샘 님(Sam Nunn)과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 의원이 발의한 소련위협감축법안(Soviet Threat Reduction Act, 1991)에 따라 시작된 미 국방부의 군축비확산 지원 프로그램이다. CTR의 기원과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동휘, “협력적 위협감축(CTR)조치 동향: 한반도 적용 가능성 대두를 계기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시리즈』(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와 Wit, Joel S., Jon Wolfstahl and Choong-suk Oh,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New York: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관심이 고조된다고 하나, 아직 초보적인 논의 과정에 불과하다. 비확산 지원은 핵폐기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 합의가 있는 후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지만, 북핵문제는 아직 협상 중이며 핵폐기 전망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제한된 규모이나마, 실제로는 대북 비확산 지원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9·19 6자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를 규정한 2007년의 10·3 6자합의에서 북한은 연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모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약속했다. 이 중에서도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해,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한다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미 정부가 이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사실상 대북 CTR 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북한의 핵 시설과 핵물질을 확보하고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CTR이 다루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비확산 지원’은 핵시설과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기반 자체를 철폐하고 이를 민수용 산업기반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구소련에 대한 CTR도 핵무기 폐기 지원과 경제적 유인책 제공 등 2개 사업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9·19 6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경제에너지 지원도 광의의 ‘비확산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6자회담 참여국은 9·19 6자 공동성명 3항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

Studies, 2006) 참조.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나아가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6자회담과 관련 6자합의 자체가 이미 ‘비확산 지원’의 틀과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CTR의 대북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크게 ‘활용론’과 ‘신중론’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우선 활용론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추가 유인책으로서 CTR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이다. 대북협상에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의 비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경수로를 포함한 매력적인 CTR 패키지를 개발하고 이를 북한에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중론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CTR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측의 요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우리의 협상카드를 조기에 노출시켜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신중론은 북한이 핵포기를 결정하고 이를 행동에 옮길 때에서야 비로소 CTR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중론은 대북 경수로 사업에도 부정적이며, ‘선 핵포기, 후 보상’의 리비아식 비확산 모델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북한이 쉽게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중론의 현실적 평가에 기초하되, 북한에 대한 핵포기 동기를 강화시키고 핵폐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활용론의 입장을 원용하고자 한다. 이 글은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대북 비확산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구 소련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이미 축적된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제기된 사업 분야와 운영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북 비확산 지원의 대표적 사업이 될 수 있는 경수로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KEDO 경수로사업 실패의 교훈을 분석한다.

## 2. 대북 비확산 지원 논의 동향

### 1) G-8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

2001년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9·11 테러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G-8 국가는 테러분자들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비확산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CTR이 구소련을 대상으로 한 양자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던 가운데, 세계적 차원의 대량살상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확산 지원 대상국의 확대와 재원 증가가 요구되었다.

2002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8 정상회의는 러시아 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과 기술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G-8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이하 ‘GP’ 또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합의하였다.<sup>2)</sup> 이는 최초 미국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었으나, 지원 참여국이 G-8으로 확대되고 대상국과 예산도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확대 CTR’로 부를 수 있다. G-8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에 걸쳐 사업비 200억 달러가 조성되었고, 이 가운데 미국이 매년 1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기여하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다른 참여국이 기여하기로

---

2) G-8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일차 자료는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산하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Reports’의 ‘Global Partnership Resource Page’(<http://cns.miis.edu/research/globpart>) 참조.

하였다. GP 사업은 사업 대상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소련, 그중에서도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비확산 효과와 러시아의 요구를 반영해 퇴역 잠수함 해체, 화학무기 폐기, 플루토늄 처분, 전략무기 제조연구 종사자의 재교육과 고용 등이 GP의 주요 사업대상이다.

최근 일부 G-8 참여국은 구소련에 집중된 CTR이 9·11 테러 이후 부각되고 있는 핵 테러 등 실질적인 안보위협 감소와 관련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CTR이 대규모의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른바 ‘기여자 피로(donor fatigue)’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비밀주의와 관료주의로 인해 CTR 사업현장에 대한 접근 및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된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4년 2월 미 국방대학교 연설에서 GP의 보편화 구상을 밝히고 많은 국가에 참여를 권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미 정부의 요청에 부응해 2004년 6월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GP 참여를 선언하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GP 참여 결정 배경에는 국제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일반적인 명분 외에도, 향후 GP의 대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5년 러시아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25만 달러, 노르웨이와 같이 추진하는 흑해함대 소속 퇴역 핵잠수함 해체 사업에 25만 달러를 각각 기여하였다. 과학기술부는 별도로 2005년 모스크바 소재 국제과학기술센터(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STC)에 70여만 달러를 기여하였다.<sup>3)</sup>

미 정부는 2004년부터 CTR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정

비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1월 미 국방대학교를 다시 찾은 자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CTR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평소 CTR에 호의적이었던 미 의회는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4년 국방 예산승인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서 국방부의 CTR 예산 중 ‘용도 미지정’ 예산 5,000만 달러를 구소련 이외 국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덧붙여 미 행정부는 에너지부의 구소련 대상 CTR 프로그램 중에서 ‘용도 미지정’ 예산 5,000만 달러를 구소련 외의 지역에 사용하는 권한도 확보하였다.

이 자금은 미 정부가 새로운 확산위협에 긴급히 대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R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국, 지원 프로그램, 지원 수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CTR 대상과 목적에 대한 논쟁은 대북 사업과 관련해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4)</sup>

우선 CTR 확대 시 대량살상무기를 이미 개발한 나라를 중심으로 대량살상무기나 프로그램의 봉쇄·축소·폐기 등을 위한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때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등 핵개발국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CTR이 상기 국가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추가 유인책이나 보상책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CTR이 과연 이 국가들의 핵개발과 핵보유 결정을 포기시킬 만큼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유인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구소련의 경우, 이미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정치적 의사결정

---

3)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편람』(서울: 외교통상부, 2007), 146~147쪽.

4) Amy F. Woolf, “Expanding Threat Reduction and Nonproliferation Programs: Concepts and Definitions,” *CRS Report*(2004).

이 있었고, CTR은 단순히 이를 집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CTR 대상은 그다지 확대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내 일부에서 핵확산국을 대상으로 한 CTR 지원에 거부감이 있고, 구소련의 핵폐기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산의 분산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이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이고, 최근 6자회담의 진전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함에 따라 대북 CTR 적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대북 CTR 논의 동향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5년 ‘대량살상무기와 물질의 비확산을 위한 G-8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한 이후 CTR 또는 GP의 대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타당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6자회담이 정체와 후퇴를 반복하고,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짐에 따라 GP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일부 비확산 전문가들은 북한을 주요 CTR 대상국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북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복합적인 비확산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8번째 핵실험국으로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3개 비공식 핵보유국을 제외하면 가장 진전된 핵능력을 갖고 있으며, NPT 체제에 대하여 최대 위협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북한

은 NPT 10조의 탈퇴조항을 실행에 옮긴 유일한 국가이다. 한때 NPT 회원국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핵확산 활동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NPT를 탈퇴하고 사찰을 거부한 경우이다. 핵확산 우려국이 사찰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NPT를 탈퇴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셈이다.

대북 CTR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2005년 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발표된 “6자회담과 그 이후: 협력적 위협감축과 북한”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 CTR 보고서 중 가장 포괄적인 이 보고서는 대북 CTR의 성공을 위하여 비적대적(non-adversarial) 접근, 쌍방향 대화와 작업, 정치성 배제, 일관성 유지, 다자적 접근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북 CTR 사업에 5년 이상의 시간과 2억~5억 달러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CSIS 연구팀은 주요 대북 CTR 사업으로 평화적 원자력연구센터, 국제과학기술센터, 우라늄 공동채광 등을 제기하고, 초기 단계의 핵 폐기가 완료된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CTR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대북 CTR의 성공을 위한 실행조치로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 다자적 접근, 민간 전문가 참여, 국내 정치적 지지와 예산 확보, CTR 제도 및 기구 정비, 대북 CTR 모델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 이후 대북 CTR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면서 다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2005년 12월에 발표한

---

5) Wit, Joel S., Jon Wolfstahl and Choong-suk Oh,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New York: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6).

보고서가 CTR에 대한 국내의 초기 관심을 반영하였다.<sup>6)</sup> 이후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CTR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미CSIS의 CTR 연구팀을 초청해 한국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부의 군축·비확산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G-8 글로벌 파트너십과 CTR의 북한 적용방안’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위 세미나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CTR과 GP의 대북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이를 실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나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였다. 6자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포기 결정 이행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인책 제공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CTR 패키지 제시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추가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대북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요컨대, 향후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염두에 두고 좀 더 체계적인 CTR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였다는 것이 이 세미나의 수확이었다.

### 3. 대북 비확산 지원 프로그램

#### 1) 비확산 지원 사업 분야

북한 비핵화를 위한 GP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할 때 과연 어떤 비확산 지원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GP의 구소련 적용

---

6) 이동휘, “협력적 위협감축(CTR)조치 동향: 한반도 적용 가능성 대두를 계기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시리즈』(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

사례를 감안한다면 다음 3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첫째,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 처분 및 폐기이다. 추가적인 핵확산을 저지하고, 특히 테러분자들의 핵물질 획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핵무기용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및 처분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때 핵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건설 지원, 핵물질 회계관리시스템의 개발, 관리 인력의 교육, 처분 및 해외이전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핵무기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에 관련 지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지원과 전직(redirection)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구소련의 경우, 핵무기 과학기술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국가가 붕괴한 탓에 이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업 제공과 전직 훈련 등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 구소련에 대한 과학기술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3세계의 핵개발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확산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CTR 지원의 필요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대량살상무기 생산기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잠재적 국제 수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과학기술연구센터 운영과 경수로사업이 북한의 군사용 핵기술자를 민수용 과학기술자로 전환시키고 해외유출을 저지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수출통제와 국경통제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다. 오늘날 세계화시대에는 국제적 교역의 활성화로 인해 대량살상무기 부품, 물질, 생산기술 등의 밀수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2004년에 유엔안보리 결의 제1540호를 통해 모든 국가가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의 이전을 통제할 수 있는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발할 때 CTR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북한의 활발한 대량살상무기 및 기술의 수출입 전력을 볼 때, 북한 내 수출통제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지원도 의미 있는 CTR 사업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대북 비확산 지원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2002년 G-8 GP성명에서 채택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위한 6개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원칙이 사실상 모두 비확산 지원 조치에 해당되어 향후 대북 비확산 지원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 ①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의 확산과 불법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 및 여타 국제문서의 채택, 보편성, 전면 이행과 강화를 장려하고, 동 협약을 이행하는 기구를 강화한다.
- ② 사용, 저장 및 이송 중인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의 계량과 안전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개발·유지하고, 이 분야에 있어 재원이 부족한 국가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 ③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의 저장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를 개발·유지하고, 이 분야의 재원이 부족한 국가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④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의 불법 거래를 탐지·저지·차단하기 위한 국경통제, 법집행 노력 및 국제협력을 개발·유지하고, 이 분야의 충분한 전문성과 재원을 갖지 못한 국가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⑤ 다자간 수출통제 리스트 상의 품목 및 동 리스트에 없더라도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및 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통제 및 환적통제를 개발·검토·유지하고, 이 분야의 법적 규제 장치의 인프라와 이행 경험 및 재원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 ⑥ 방위목적에 필요 없는 핵물질의 관리 및 처분, 모든 화학무기의 폐기, 위험한 생물병원체 및 독소 보유를 최소화하면 테러분자의 획득 위협도 낮아진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한다.<sup>7)</sup>

GP에서 밝히듯이 대량살상무기와 물질의 계량, 안전조치와 폐기, 물리적 방호시설, 핵확산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수출통제 제도 정비, 잉여 대량살상물질의 폐기와 재고 감소 등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원칙과 사업은 북한에도 최대한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비확산 조치는 기존의 국제비확산조약, 다자수출통제체제, 안보리 결의 제1540호가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해서 비확산 및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방호, 이전 등에 필요한 재원과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 2) 비확산 지원 사업 운영지침

G-8 글로벌 파트너십은 협력적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운영지침으로 아래 9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7) G-8 성명 전문(<http://www.g8.gc.ca/2002Kananaskis/kananaskis/globpart-cn.asp>).

- ① 상호합의된 목적의 달성 보장, 작업 성과 확인, 지출자금의 확인, 그리고 공여자 대표의 작업현장 접근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효과적인 감시, 회계, 투명성 조치 및 절차를 유지한다.
- ② 프로젝트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을 유지한다.
- ③ 프로젝트별로 명확히 규정된 이정표를 개발해야 하며, 이정표에 미달한다면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옵션을 포함해야 한다.
- ④ 제공되는 물질·장비·기술·서비스·전문지식은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 프로젝트의 이행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도난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물리적 방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⑤ 모든 정부는 모든 제공을 무료 기술지원으로 하여 세금, 관세, 여타 비용의 면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⑥ 물자와 서비스의 획득은 가능한 한 공개적 국제관행을 따르며, 개별 국가의 국가안보상 요구와 부합되게 수행한다.
- ⑦ 모든 국가는 협력조치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청구로부터 공여국, 공여국 인사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⑧ 협력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정부 공여자 대표들에게 적절한 특권과 면책을 제공한다.
- ⑨ 민감한 정보와 지적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위에서 열거된 투명성과 접근 보장, 환경과 안전 기준, 성과관리, 평화적 용도, 전용 금지 및 물리적 방호, 비용 면제, 물자획득 기준, 손해배상 보호, 특권과 면책, 민감 정보와 지적재산 보호 등 9개 지침

은 사실 CTR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대외 지원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초기 CTR 프로젝트가 구소련의 반발에 부딪혔듯이 프로젝트 초기에 북한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대북 비확산 지원을 위한 보편적이며 효과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② 환경과 안전 기준 적용, ④ 평화적 용도 사용, 전용 금지 및 물리적 방호조치, ⑤ 관세 및 비용 면제, ⑥ 국제적 관행에 따른 물자 획득, ⑧ 참여자에게 특권과 면책 제공, ⑨ 민감 정보 및 지적재산 보호 등은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단 CTR 수용에 동의한 이상, 이런 원칙의 적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또한 이미 KEDO 경수로사업 당시 이에 준하는 원칙이 충분히 적용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① 투명성과 접근 보장, ③ 성과 미달 시 중단 옵션 유지, ⑦ 모든 배상 청구로부터 보호 등 3개 항은 북한의 준수 이행의지가 부족하거나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우선 ‘투명성과 접근 보장’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지 의문이다. 구소련의 경우에도 CTR 사업 초기 공여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으로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이 협조적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체제의 비밀주의적·관료주의적 특성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정권유지를 위해 비밀주의, 반개방주의, 군사주의 원칙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명성과 접근 보장을 관련 사업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접근한다면 북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즉, CTR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에는 신중하고 제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성과 미달 시 ‘사업 종료 옵션’을 유지하는 원칙은 대북 비확

산 지원 사업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북 CTR은 북한의 핵 무기와 핵개발 능력을 제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만약 비핵화의 성과가 미달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한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이 2002년 말 발생한 비밀 핵농축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자 KEDO 경수로사업과 중유 제공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즉각 핵개발을 재개하고, 핵무기용 플루토늄 재고를 4배 이상 늘리고, 2006년 10월 끝내 핵실험까지 실시하였다. KEDO 사업을 중단한 결과,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 중단 옵션은 북한의 경우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 문제가 있다. 비확산 지원 공여국과 사업자들은 대북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손해배상 면책 또는 청구로부터 보호의지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한 탓에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KEDO 경수로사업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보호문제가 북한의 역량 부족으로 결국 해결되지 못하였듯이, 손해배상 문제가 향후 대북 비확산사업에서 심각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4. 대북 비확산 지원 사업 사례: 경수로사업

KEDO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과 보상으로 시작하였다.<sup>8)</sup> 경수로사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군사용 핵시

설과 핵전문가를 민수용 원자력발전 시설과 민수용 원자력 전문가로 전직시키기 위한 비확산 지원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경수로사업은 러시아에서 핵무기 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핵무기 과학기술자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과학기술센터’의 기능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접근’이 이미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수로사업은 결국 북한의 비협조와 비밀 농축핵개발 계획,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 실패 경험과 교훈은 향후 대북 CTR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1) 대북 경수로사업 전망

북핵 불능화 이후 폐기 단계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북한의 입장을 볼 때 경수로 또는 전력 지원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경수로나 그 대안으로서 전력 제공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경수로 절대 불가 입장을 감안해 2005년 7월 ‘경수로 포기, 전력 제공’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2005년 9·19 6자 공동성명에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할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선 경수로 제공과 신뢰 조성, 후 핵폐기와 NPT 복귀’ 방식을 선호한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 관계 정상화, 위협 제거, 경수로 제공, 신뢰 조성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최종 단계에서 핵폐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이렇게 경수로

---

8) KEDO 경수로사업 배경 및 경과는 통일부 경수로지원기획단, 『KEDO 경수로사업 지원 백서』(서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2007) 참조

에 집착하는 배경으로 실질적인 전력 필요 이외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직접적인 관심도 있다. 6자 공동성명이 채택된 바로 다음날,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밝힌 경수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번 6자 공동성명에 천명된 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 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며 IAEA와 담보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다. 이미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조·미 관계가 정상화되어 신뢰가 조성되고 우리가 미국의 핵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로 되는 경수로를 하루빨리 제공하는 것이다. 신뢰 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역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지심 깊이 뿌리박힌 천연 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한 입장이다.<sup>9)</sup>

한편, 경수로사업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제거하고, IAEA에 이를 검증받고, NPT와 IAEA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이에 대한 협력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핵기술 확산을 중단하는 등 4개 조건하에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핵의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되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미국의 경수로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여지가 있다.

북한 금호부지의 KEDO 경수로를 재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

9) 『조선중앙통신』(2005. 9. 20).

경수로사업비로 최소한 약 33억 달러(3조 1,350억 원, 1달러=950원 기준)가 소요될 전망이다. 원 사업비 46억 달러가 실제 사업비 추가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경비 부담 시나리오는 ① KEDO식으로 한국 70% 부담, ② 5개국 균등 부담, ③ 한국 모두 부담, ④ ‘①과 ②’의 중간 부담 등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①, ②, ③의 가능성은 낮고, ④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업 기간은 북한의 사찰 수용, 경수로사업 협조, 미국의 지원 등 여러 변수에 달렸으나,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KEDO 경수로사업의 교훈

미국은 1994년 10월 북미 기본 합의문에서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폐기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200 메가와트(MWe)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은 경수로 제공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함께 1995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를 창설하고 경수로 제공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KEDO는 1995년 12월 북한과 경수로공급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7년 8월에는 부지 정지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후속 의정서와 재정문제가 완결되지 않아 본 공사가 지체되다가, 1999년 12월에야 KEDO와 한국전력 간 주계약이 체결되어 경수로 건설 본 공사가 본격 개시되었다. 북한의 비협조와 군사적 도발, KEDO 측의 재정 미확보 등으로 경수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지 5년 만에 비로소 경수로 건설을 위한 본 계약이 체결되고 본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2001년 9월 본관 기초 굴착에 착수하고, 2002년 8월에는 원자로 기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경수로 건설의 핵심 공정을 착실히 추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미국은 같은 해 11월 중유 제공을 중단하고,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로 12월 핵동결을 해제하고 IAEA 사찰관을 축출하였으며, 2003년 1월 NPT를 탈퇴하였다. 이에 대해 KEDO 집행이사회는 2003년 11월 경수로 건설공사를 1년간 중단하기로 선언하였고, 그해 12월 1일을 기점으로 34% 공사완료 상태에서 동결시켰다. 그동안 총공사비로 약 15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한국은 70% 부담원칙에 따라 약 11억 달러, 일본은 총 10억 달러 기여 약정액 중에서 약 4억 달러를 지출한 상태였다.

그런데 6자회담 과정에서 경수로의 재개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9·19 6자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경수로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KEDO 경수로사업의 실패 배경에 대해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비밀 농축핵개발이 경수로 중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나, 농축핵개발 사건 이전에도 경수로사업의 진전을 지체시키고 사업 자체를 위협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다. 이들 요소는 향후의 대북 CTR 사업에서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KEDO 경수로사업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성실한 합의서와 계약서 이행, 참여국의 정치적 재정적 지지, 경수로 수용을 위한 북한의 역량과 제도 정비, 북한의 비확산 규범 준수 등 4개 요소가 향후 경수로사업의 성공 조건이 된다. 그런데 아직 북한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의사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우선 북한의 합의 불이행 문제가 있다. KEDO 경수로사업이 지연된 배경에는 북한의 무수한 약속 위반이 있다. 북측은 노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정에서 사전에 합의된 임금 수준으로 KEDO 측이 원하는 인원수만큼 노무자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체 노무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정이 지체되었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부지공사 준비 단계에서 현장 인근 해안의 해양조사가 필요하였으나, 북한이 해양 탐사기능을 갖춘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북한수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여 해양조사선이 북한수역에 진입하는 항로의 협상에만 수개월이 소요되었다. 경수로의 설계에 필요한 각종 통계수치를 확보하는 것도 북한의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둘째, 경수로사업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북한 잠수함 동해안 침투사건(1996년 9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사건(1998년 8월)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과 일본이 각각 경수로사업에 대한 지지를 유보해 경수로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바 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이 KEDO 경수로사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고, 이는 곧바로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다.

셋째, 북한의 경수로 수용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KEDO 경수로 부품 공급업자들은 공급의 전제조건으로 핵사고 시 보상체제의 완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낮은 국가신용도 때문에 보상체제 정비에 필수적인 국제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어 결국 국가적 보상체제를 구비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하청업자가 KEDO 사업 참

---

10) 전봉근, “대북 경수로사업의 성공 조건 및 전망,” 『정세와 정책』, 2000년 11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0).

여를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또는 국가신용도와 연관되어 있어 단시간 내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확산의무 이행문제가 있다. 북한의 사찰 거부가 바로 제네바합의체제 붕괴를 야기한 핵심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북미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시설의 사찰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 IAEA는 제네바합의 이후 이미 10회 이상 북측과 사찰에 대한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북한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미래의 경수로사업이 반드시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의 과도한 비밀주의, 폐쇄성, 비협조적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수로사업의 정치적 성격과 초대형 경제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국가신용도와 재정동원 문제, 6자회담 참여국의 지지는 여전히 중요한 조건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물론 KEDO 경수로사업의 긍정적인 교훈도 있다. 북한과 KEDO는 경수로사업자를 위하여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Protocol on the Juridical Status,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Consular Affairs)를 체결하였다. 이 의정서는 KEDO의 재산 및 자산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데, KEDO와 KEDO의 자산은 북한 내에서 그 위치나 소유자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법적·행정적 절차 및 여타 유사한 절차에서 면제를 받는다. 즉, KEDO의 재산과 자산은 북한 내에서 위치나 소유자를 불문하고 수색·징발·압류·수용 및 어떠한 형태의 간섭에서든지 면제된다. 북한은 KEDO의 재산, 사무소 및 자산을 보호하고 KEDO 사무소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또한 KEDO와 그 재산·자산·소득과 수행하는 활동은 모든 세금 및 관세,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과금 및 수수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또한 KEDO의 모든 전문 직원과 KEDO 대표단 구성원은 특권 및 다양한 면제를 향유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요한 특권 및 면제 사항들은 형사·민사·행정 재판권과 증언으로부터 면제, 개인 주거와 서류 및 문서를 포함한 자산의 불가침, 모든 세금 및 관세,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이러한 포괄적 신분보장에 대한 의정서는 향후 GP 비확산사업에도 원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전례가 된다.

## 5. 결론

CTR 발의자 중 한 명인 샘 년 미국 상원의원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 직후 성명을 발표해 북핵과 같은 핵확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촉구하였다. 년 의원은 이 성명에서 ① 핵물질 사찰 및 전용방지 감시체제 강화, ② 핵무기 비확산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수용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지원, ③ 핵물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④ 안보리 결의 제1540호 집행 등 비확산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년-루거형 프로그램 개발, ⑤ 전 세계의 핵무기용 핵물질 확보와 제거 등의 5개 항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핵물질 사찰체제 강화, 원자력발전 지원 등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수출통제 제도 정비, 핵무기용 이외의 핵물질에 대한 감시와 방호체제 등은 정치적 민감성이 낮아 북한이

수용한다면 한국이 당장 직접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전면적인 대북 비확산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미국이 대북 협상에 필요한 정치적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6자회담과 북미 대화에서 미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대북 협상 태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또한 대북 비확산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북한의 동의와 협조이다. 구소련에 대한 CTR도 수용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를 전제로 6자회담 참여국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비확산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를 위해 G-8 GP가 제기한 프로그램, 북핵폐기 프로그램, 안보리 결의안 제1540호 프로그램, 1차 북핵위기의 산물인 경수로사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대북 비확산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의 운영원칙에 대한 합의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북한의 경직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업의 운영원칙에서 정치적 융통성이 다소 발휘되어야 하며, 고위급 정치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2월 25일 / ■ 채택: 4월 5일

## 참고문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감소』, 국제학술회의자료집(2008.2.1).
- 박기덕 공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서울: 세종연구소, 2008).
-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편람』(서울: 외교통상부, 2007).
- 이동휘, “협력적 위협감축(CTR)조치 동향: 한반도 적용 가능성 대두를 계기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시리즈』(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전봉근, “대북 경수로사업의 성공 조건 및 전망,” 『정세와 정책』, 2000년 11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0).
- \_\_\_\_\_,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접근,” 박기덕 공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서울: 세종연구소, 2007).
- 전성훈,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분석』(통일연구원, 2007).
- 통일부 경수로지원기획단, 『KEDO 경수로사업 지원 백서』(서울: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 2007).
-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비확산핸드북』(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2003).
- Orlove, Vladimir,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 Guidebook*(Moscow: Human Rights Publishers, 2006).
- Squassoni, Sharon, “Globalizing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 Survey of Op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October 2006).
- Wit, Joel S., Jon Wolfstahl and Choong-suk Oh,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New York: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6).
- Woolf, Amy F., “Expanding Threat Reduction and Nonproliferation Programs: Concepts and Defini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2004).
- Global Partnership Resource Page(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http://cns.miis.edu/research/globpart/\(2007.10.11\)](http://cns.miis.edu/research/globpart/(2007.10.11))

## Global Partnership for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Jun, Bong-geun(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nonproliferation assistance” o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recently as tools to induce or accelera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the Six-party Talks make progress. Since the United States agreed to lead the disablement activities and provide the initial funding for those activities at the October 3rd Six-party Agreement(2007), we may say that initial CTR measures on North Korea have already begun.

In consideration of the ca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the CTR program for North Korea should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areas: First, there should be a system to safely store and dispose of nuclear material. For thi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building of a facility for the safe storage of nuclear material, establish the nuclear accounting system, educate technical people, and dispose of and transfer nuclear material abroad. Secondly, there should be a redirection and support system that helps prevent nuclear scientists from selling their nuclear bomb knowledge and skills. An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and light-water reactor project in North Korea would help redirect nuclear scientists to civilian areas. Lastly, there will be a support program to help set up and strengthen export and border control systems. Considering North Korea's active international trad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export and border control systems become critical.

In order to make nonproliferation assistance to North Korea successful, we need to pay attention to nine guidelines as agreed upon at the 2002 Global Partnership: transparency and access guarantee, environment and safety, performance management, peaceful use, physical protection, transfer prohibition, expense exemptions, protection from liability,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and sensitive information.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resistance and inability, there is a need to be cautious when demanding transparency and access guarantee and liability protection, and exercise a right to stop the project.

Finall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esumption of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here should be a careful analysis of the causes for the failure of the KEDO project. It is important to develop strategies to deal with such problems as North Korea's noncompliance with agreements, its inability to receive and operate light-water reactors, liability protection in case of nuclear accidents, and continuous political support for the project.

Keywor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G-8 Global Partnership,  
North Korea Nuclear Issue, Six-party Talks